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07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31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52,297,650원의 취득세 등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52,297,650원의 취득세 등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9. 10.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9행의 "징수고지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징수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관련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 2쪽 아래에서 7~8행의 "본세만의 취소를 구하고"를 "본세만을 다투고"로 고친다.

○ 3쪽 5행의 "검사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자신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위 범죄사실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H이나 G를 직접 만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직접 접촉한 E, D은 원고가 위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범행을 알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 3쪽 6행의 "2016형제32636호)."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H 등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 3쪽 11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법무사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B 명의의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등기공무원에게 발각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 당연무효이고,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나아가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이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의 경우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71조에서 신고 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도록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방세법은 2010. 3. 31. 전부 개정을 통하여, 제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0조에서는 수정신고를, 제51조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2015. 5. 18. 개정되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② 한편, 지방세에 관한 위 규정과 달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신고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에도 제45조의2에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만약 이 사건 취득세가 국세였다면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E으로부터 '채무변제 대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담보대출을 받기 곤란하므로,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담보대출 과정에 협력하여 주면 3,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E과 H 등은 공동하여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을 원고에게 이전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결국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는 등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B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에는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⑤ 이 사건 신고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취득세신고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위임자란에 원고의 날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위임에 의한 신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9. 22.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신고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신고에 존재하는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원고가 2008년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효라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피고는 취득세 등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하자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신고인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점, △ 원고가 2008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피고의 징수 독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이 사기행위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08

인한 것임을 주장한 점, △ 피고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신고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이 국세기본법에 비하여 납세자의 권익구제에 미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